

#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안자 : 김화수 의원의

## □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(도의 책무)제3항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”를“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,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조 제3조제4항중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함
- 안 제11조제1항중 “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”를 “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함
- 제13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함

##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도의 책무)제3항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”를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동조 제4항중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중 “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” 를 “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</p> <p>제3조(도의 책무) ① ② (생략)</p> <p>③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<u>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</u></p> <p>④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<u>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1조(회의) ①협회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<u>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</u>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회의 개최 3일전까지</u>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<b>(신설)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</p> <p>제3조(도의 책무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..... <u>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..... .....<u>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(회의) ①..... .....<u>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</u> ..... .....</p> <p>②.....<u>회의 개최 7일전까지</u>..... ..... .....</p> <p>③~⑤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